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9. 3.(금) 10:00

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23호
- 나. 제 출 자 : 김영섭 · 윤영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1. 8. 24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8. 24.

2. 제안이유

- 저장강박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, 본인 가정은 물론 주변 이웃에게 악취, 벌레 발생 등을 유발시켜 주변 생활환경까지 피해를 주게 되어 이웃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지원대상(안 제5조)
- 다. 지원내용 (안 제6조)
- 라.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3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1. 8. 24. ~ 8. 30.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금천구 관내 저장강박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발굴하고, 이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,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쓰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

2) 지원대상, 내용(안 제5조~ 안 제6조)

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고, 생활폐기물 수거,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내용을 규정.

3)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(안 제7조)

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.

다. 검토의견

-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은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2호 ‘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’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
-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....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□ 「사회보장기본법」

[시행 2020. 7. 8.] [법률 제17202호, 2020. 4. 7., 일부개정]

제23조(사회서비스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, 사회참여,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